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단12608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발전설비기자재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주식회사 G로부터 보일러 정비 및 구조개선 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F와의 사이에, 2019. 7. 3. F가 수주한 위 공사 중 엔지니어링 부분(이하 이 사건 공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0. 2. 7.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공사대금 4억 6,75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8. 2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77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의 대금 지불 조건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9. 7. 30. 1,100만 원을, 2019. 8. 21.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송금한 합계 2,200만 원을 이 사건 1차 송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19. 9. 24.부터 2020. 9. 3.까지 별지 기재 송금액과 같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의 대금에 해당하는 합계 3억 3,77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20. 12. 1. 피고 C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3차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4. 2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2020. 5. 1.부터 월 급여 500만 원, 상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21. 7. 30. 퇴직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가 E를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할 2020년 및 2021년도 종합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2020. 7. 2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1. 7. 15. 종합소득세 합계가 12,860,980원(= 2020년도 5,186,060원 + 2021년도 7,674,920원)으로 확정되자, 2021. 9. 15. 원고에게 2,860,98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은 3억 3,770만 원인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1차 송금액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2019. 9. 24.부터 2020. 9. 3.까지 이 사건 2차 송금액 3억 3,770만 원을 송금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보다 2,200만 원을 초과 수령하여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20. 4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F에 대하여 가지는 잔여 공사대금 수령권 등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피고 회사가 양수하고, 그 대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부터 2021. 7. 30.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에게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2차 송금액은 피고 회사 계좌로, 이 사건 3차 송금액은 피고 C의 계좌로 각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반환요구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1, 2차 송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보다 2,200만 원이 더 많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수행비 등의 명목으로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인 4,0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1차 송금액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차 송금액을 보낸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건 2차 송금액을 보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③ 더욱이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하기 전에 매번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등 지급할 금액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20. 5.부터 같은 해 7.까지 F로부터 매달 수령한 공사대금을 그때그때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20. 8.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을 수령한 후 2020. 8. 31. 피고 회사에 3,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200만 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3차 송금액을 피고 C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1, 2, 3차 송금액을 보낸 후로도 2021. 7. 30.까지 상당한 기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는바, 이러한 원고가 2,200만 원이 피고 회사에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⑥ 피고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하였는바, D이 증언한 내용과 증언 태도, D의 신분과 원고 및 피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거짓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내세우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2,2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공사대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2020. 1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3차 송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3차 송금액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 거래와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3차 송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증인 D의 증언이나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의 입사한 정황,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F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에 송금한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3차 송금액을 피고 회사가 받아야 되나 피고 C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로 인해 증가하게 된 원고의 소득세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0년 및 2021년도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12,860,980원을 부담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3차 송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C을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봉수